

2023. 4. 4.

제 목 : 장기요양 시설·재가 금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

위의 건의안을 「지방자치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서  
불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불임 : 장기요양 시설·재가 금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 1부. 끝.

발의자 정현호 의원(인)

정현호 의원 등 8인

(찬성자 서명 별첨)

#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

(정현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1343
----------	-------

발의연월일 : 2023. 4. 4.

발의자 : 정현호의원 등 8인

## 1. 주문

-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 및 지자체의 재정 여력을 감안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국가 사무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함

## 2. 제안이유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부담은 국가가 80%, 지자체가 20%로 분담되고 있지만, 수급권자가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에 따라 100%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양주시는 2023년 234억 원의 예산을 장기요양급여로 집행 예정이며, 이는 양주시의 자주재원 중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인건비, 물건비 등을 제외한 투자사업비의 26%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임
-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기관 총량제에도 불구하고 양주시의 장기요양급여 수급권자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고, 향후 재정적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견됨. 이에 진정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국가 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률 개정을 건의함

###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발췌서, 국회회의록,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현황, 2023년 경기도 시군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현황 등

### **4. 보낼 곳**

-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성호국회의원실, 17개 광역시도, 경기도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31개 시군 등

### **5. 붙임 :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 전문**

##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7조, 제13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 운영 등을 위하여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되며, 국가시책 달성에 필요한 경비의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과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는 법령에 규정된 원칙이 우리의 현실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국민적 관심을 받으며 2007년 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수발보험법안 및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 등 8개의 입법안이 병합·심의되어, 산고 끝에 세상에 나온 법령이다.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 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국민의 보험료를 납부하여 재정을 마련하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제정되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제정 단계부터 10년 동안 투입되는 정부 보조금만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었다. 이에 제정 당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은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누어 분담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2015년 시행령 제28조를 개정함으로써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부담으로 전가 시켰다. 통상적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사업비는 국가에서 80%를 지자체는 20%를 분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의료수급권자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전환되면 이들에 대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100%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시한 장기요양보험의 수입 구조를 살펴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조 3,397억 원을 국가는 2조 1,570억 원을 지출하였다. 지방자치 단체의 분담률이 17.5%로 국가(16.2%)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8년 대비 2021년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수는 2.9%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에 따른 사업예산은 보험수가 인상 등으로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60.2%가 상승하였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서울시의 장기요양급여의 분담 비중은 0.9%p 감소를 나타냈다. 전국 의료 급여 수급권자 중 서울시의 비중이 오히려 0.3%p 상승한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해당 기간 경기도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평균 24만 6천 명으로 서울시(25만 5천 명)의 97%대 수준이었으나, 경기도가 지출한 장기요양급여는 서울시 부담금의 1.8배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도와 서울시의 비용 부담 차는 점차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장기요양급여 일부를 경기도가 부담하고 있다는 주장을 합리적인 추론으로 만든다. 실제 경기도 내에서도 양주시를 비롯한 고양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부천시 등 서울에 인접한 지자체는 타시에 비해 매년 가파른 상승세로 막대한 예산을 장기요양급여에 쏟아붓고 있다.

우리 양주시의 현실은 더욱 가혹하다. 2023년 양주시의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 1,632명으로 양주시 노인 인구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경기도 평균인 1.5%의 2.6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경기도는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대상자가 43%, 재가 급여 대상자가 57%를 나타낸다. 그러나 양주시는 시설급여 대상자가 66%, 재가급여 대상자가 34%로 시설급여 대상자가 경기도와는 상반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주시는 경기도 도비 매칭 사업에 따라 2023년에 234억 원을 장기요양급여로 집행

할 예정이다. 이는 양주시의 자주재원 중 기본적으로 투입되는 인건비, 물건비 등을 제외한 투자사업비의 26%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이다.

양주시 재정자주도는 2018년 65.2%에서 2023년 56.9%까지 매년 점차 낮아지고 있다. 특히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61.6%인 것에 반해 양주시 재정자립도는 26.7%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매년 부담이 급증하는 장기요양급여는 양주시 재정자립도 및 재정 자주도 하락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 양주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신규 설치를 제한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총량제)”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2021년 4월에 수요 대비 123%를 나타냈던 공급률이 2022년 12월에는 133%로 더욱 상승하였다. 총량제 이전 승인된 시설들이 아직도 건립중에 있어 당분간 양주시 부담은 더욱 가중 될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자치분권 및 재정분권이 확대되었다. 그에 따라 국가 사무의 지자체 이양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집행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양주시는 과중한 장기요양급여 부담이라는 고충까지 겪고 있다.

이에 우리 25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양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건의한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에 과중한 의무를 부담토록 하는 현행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등을 즉각 개정하고, 장기 요양급여를 국가 사무로 전환하라

하나, 경기도 31개 시군 중 서울시 인접 지역인 양주시와 고양시는 장기요양급여 부담이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12월 전수 조사 된 양주시의 장기요양 시설급여 대상자의 타지역 유입 비율도 39.5%로 나타 났다.

경기도는 경기 시군의 막대한 피해를 직시하고, 서울시 등 관외 전입자에 대한 사업비 부담을 해당 시에서 분담토록 하여 과도한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경기 31개 시군의 부담이 개선되도록 즉각 적극 행정을 추진하라

하나, 경기도의 31개 시군은 장기요양 시설급여의 50%와 재가급여의 90%를 분담 하고 있다. 경기도는 장기요양급여의 비용 분담에 대해 일률편파적인 비율을 적용하지 말고,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등 지자체의 실정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2023. 4. 4.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

## 참고1

### 관계 법령 발췌서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2. 6. 22.] [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일부개정]

- 제58조(국가의 부담) ①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개정 2019. 1. 15.>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제40조제2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면제 및 감경됨으로 인하여 공단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한다. <개정 2021. 12. 21.>
-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가 분담한다. <개정 2013. 8. 13.>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 부과, 징수 및 재원관리, 그 밖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3. 1. 1.] [대통령령 제33100호, 2022. 12. 20., 일부개정]

-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 1. 26., 2011. 10. 26., 2015. 12. 30.>

1. 삭제 <2015. 12. 30.>

1의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가. 국가 부담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기준보조율에 따른 금액

나.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가목에 따른 국가 부담분 외의 금액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추정 급여비용을 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0., 2010. 3. 15., 2014. 2. 11.>

③ 제2항에 따른 추정 급여비용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 3. 15.>

[본조신설 2008. 6. 11.]

[대통령령 제22001호(2010. 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3. 3. 1.] [보건복지부령 제934호, 2022. 12. 30., 일부개정]

제41조(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가 분담하는 금액은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8. 6. 11.]

## □ 「의료급여법」 [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74호, 2019. 4. 23., 일부개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0., 2015. 3. 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이하 생략>

##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 제7장 재무

## 제1절 재정 운영의 기본원칙

제136조(지방재정의 조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적절한 재정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4.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④ 국가는 제3항 각 호의 기관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입지 선정의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8조(국가시책의 구현)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시책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국고보조율과 지방비부담률은 법령으로 정한다.

## 참고2

### 법령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가중

○ 2015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및 부담 가중

개정 전	현행
<p><b>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b>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lt;개정 2010. 1. 26., 2011. 10. 26.&gt;</p> <p>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비용: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b>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부담</b>한다.</p> <p>2. 제1호 외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비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p> <p>가. 국가 부담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기준보조율에 따른 금액</p> <p>나.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가목에 따른 국가 부담분 외의 금액</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추정 급여비용을 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lt;개정 2009. 12. 30., 2010. 3. 15., 2014. 2. 11.&gt;</p> <p>③ 제2항에 따른 추정 급여비용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0. 3. 15.&gt; [본조신설 2008. 6. 11.]</p> <p>[대통령령 제22001호(2010. 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p>	<p><b>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b>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lt;개정 2010. 1. 26., 2011. 10. 26., 2015. 12. 30.&gt;</p> <p>1. 삭제 &lt;2015. 12. 30.&gt;</p> <p>1의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b>지방자치단체가 부담</b>한다.</p> <p>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한 비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p> <p>가. 국가 부담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기준보조율에 따른 금액</p> <p>나.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가목에 따른 국가 부담분 외의 금액</p> <p>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추정 급여비용을 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lt;개정 2009. 12. 30., 2010. 3. 15., 2014. 2. 11.&gt;</p> <p>③ 제2항에 따른 추정 급여비용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lt;개정 2010. 3. 15.&gt; [본조신설 2008. 6. 11.]</p> <p>[대통령령 제22001호(2010. 1. 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p>

\* 분권교부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에 따라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지방교부세로 이전한 것

### 참고3

### 국회회의록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 ○ [17632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 접수

###### ▶ 의안접수정보

의안번호	제안일자	제안자	문서	제안회기
176322	2007-03-30	보건복지위원장	의안원문	제17대(2004~2008) 제266회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제안경위

노인수발보험법안 제3931호 정부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 제4271호 청형근의원

국민요양보장법안 제4400호 안명숙의원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 제4702호 김춘진의원

장기요양보장법안 제4894호 현애자의원

장기요양보험법안 제4913호 강향숙의원

위 6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제265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07.2.22)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면서 7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기로 의결함.

##### • 위원회 심사

###### ▶ 소관위 심사정보

소관위원회	회부일	상경일	처리일	처리결과	문서
보건복지위원회	2007-02-22	2007-02-22	2007-02-22	원안가결	

###### ▶ 소관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2007-02-22	상정/소위심사보고/의결(일안가결)	[ 요약]

######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정보

회부일	상경일	처리일	처리결과	체계자구검토보고서
2007-03-02	2007-03-02	2007-03-30	수정가결	[]

###### ▶ 법사위 회의정보

회의명	회의일	회의결과	회의록
제265회 국회(임시회) 제6차 전체회의	2007-03-02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요약]
제26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 소위	2007-03-29	상정/의결(수정가결)	[ 요약]
제266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	2007-03-30	상정/의결(수정가결)	[ 요약]

##### • 본회의 심의

###### ▶ 본회의 심의정보

상경일	의결일	회의명	회의결과	회의록
2007-04-02	2007-04-02	제266회 제1차	월안가결	[ 요약]

## 참고4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 현황

### ○ 2022년도 수입·지출 총괄표

- 장기요양사업의 수입은 크게 66%의 사업수입(보험료수입), 20%의 부담금(국가 및 지자체 부담금), 14%의 보조금(국고지원금)으로 구성
- 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분담금 2조 3,397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국가 분담금은 (국가 부담금+국고지원금) 2조 1,570억원
- 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17.5%, 국가가 16.2%를 분담  
(단위 : 백만원)

구분		소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서울요양원)
정부 지원 수입	직접지원	보조금	1,805,761	1,805,761	-
		부담금	2,690,931	2,690,931	-
	간접지원	사업수입	8,801,021	8,801,021	-
		소계	13,297,713	13,297,713	-
기타사업수입		7,002	-	7,002	
부대수입		46,197	46,072	125	
기타		△4,181	△4,466	285	
수 입 합 계		13,346,731	13,339,319	7,412	

### ○ 장기요양급여 및 의료수급권자 시·도 현황

- 2018~2022년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인 의료수급권자 수는 경기도가 서울시의 96%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장기요양 의료급여 실질 부담금은 1.8배 높게 집행
- 같은 기간 경기도의 장기요양 의료급여 분담금 증가율은 63.7%로 전국(60.1%)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서울시의 분담률( $13.3\% \rightarrow 12.4\%$ )은 오히려 0.9%p 감소

[경기도의 [의료급여 실질 부담금](#) 및 [의료수급권자 현황](#)]

년도	장기요양기초 수급권자(천명)	의료수급권자 수(명)		의료수급 비중(%)		기초 분담금(억원)			기초 분담률(%)	
		경기	서울	경기	서울	전국	경기	서울	경기	서울
2018	1,390	239	249	16.1	16.8	13,252	2,959	1,759	22.3	13.3
2019	1,393	243	251	16.3	16.8	16,052	3,662	2,072	22.8	12.9
2020	1,435	252	260	16.5	17.1	18,747	4,300	2,347	22.9	12.5
2021	1,430	252	260	16.6	17.1	21,223	4,845	2,630	22.8	12.4
종합	2.9% 증가	경기의 의료수급권자 수는 서울의 97% 수준	0.5%p 증가	0.3%p 증가	60.2% 증가	63.7% 증가	49.5% 증가	0.5%p 증가	0.9%p 감소	

## 참고5

## 2023년 경기도 시군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현황

(단위 : %)

구분	노인 인구 (65세 이상)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장기요양급여 비중	
		대상자(명)	비중(%)	시설	재가	시설	재가
고양시	163,080	2,475	1.5	1,207	1,268	49%	51%
부천시	125,752	2,155	1.7	747	1,408	35%	65%
남양주시	115,165	2,116	1.8	1,052	1,064	50%	50%
수원시	147,122	1,945	1.3	622	1,323	32%	68%
의정부시	77,555	1,834	2.4	813	1,021	44%	56%
안산시	81,511	1,815	2.2	841	974	46%	54%
성남시	144,800	1,674	1.2	337	1,337	20%	80%
양주시	41,886	1,632	3.9	1,079	553	66%	34%
파주시	73,543	1,449	2.0	779	670	54%	46%
용인시	157,226	1,309	0.8	685	624	52%	48%
평택시	73,372	1,095	1.5	376	719	34%	66%
화성시	89,334	1,040	1.2	476	564	46%	54%
시흥시	54,756	1,031	1.9	480	551	47%	53%
김포시	66,858	822	1.2	338	484	41%	59%
안양시	84,390	769	0.9	274	495	36%	64%
포천시	32,863	741	2.3	400	341	54%	46%
안성시	36,284	703	1.9	360	343	51%	49%
군포시	40,752	700	1.7	308	392	44%	56%
동두천시	20,464	557	2.7	290	267	52%	48%
광주시	59,448	551	0.9	211	340	38%	62%
광명시	45,128	509	1.1	118	391	23%	77%
여주시	27,269	479	1.8	202	277	42%	58%
양평군	34,217	473	1.4	183	290	39%	61%
이천시	34,750	451	1.3	164	287	36%	64%
오산시	25,237	383	1.5	145	238	38%	62%
하남시	44,618	380	0.9	88	292	23%	77%
가평군	17,841	352	2.0	193	159	55%	45%
구리시	29,173	340	1.2	91	249	27%	73%
연천군	12,319	328	2.7	123	205	38%	63%
의왕시	24,954	197	0.8	60	137	30%	70%
과천시	11,140	61	0.5	23	38	38%	62%
경기도	1,992,807	30,366	1.5	13,065	17,301	43%	57%

## 참고6

## 경기도 장기요양 시설급여 대상자 수 및 예산

○ 경기도 장기요양 시설급여 대상자 수 및 금액 변동사항(2023년 예산액 순)

(단위 : 명,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년 대비 23년 증감률	
	대상자	시설급여	대상자	시설급여	대상자	시설급여	대상자	시설급여	대상자	시설급여
경기도	10,072	261,415	11,253	290,377	13,232	342,153	13,065	359,131	30%	37%
고양시	844	21,922	963	24,843	1,253	32,400	1,207	33,178	43%	51%
양주시	531	13,792	664	17,144	1,059	27,384	1,079	29,660	103%	115%
남양주시	862	22,396	898	23,173	1,074	27,771	1,052	28,917	22%	29%
안산시	631	16,364	700	18,061	840	21,721	841	23,117	33%	41%
의정부시	802	20,839	891	22,999	845	21,850	813	22,348	1%	7%
파주시	380	9,866	422	10,889	753	19,471	779	21,413	105%	117%
부천시	566	14,689	701	18,094	742	19,187	747	20,534	32%	40%
용인시	423	10,971	469	12,108	666	17,221	685	18,829	62%	72%
수원시	458	11,885	477	12,298	634	16,394	622	17,098	36%	44%
시흥시	270	7,004	300	7,730	460	11,895	480	13,194	78%	88%
화성시	377	9,781	418	10,795	501	12,955	476	13,084	26%	34%
포천시	344	8,927	358	9,236	403	10,421	400	10,995	16%	23%
평택시	251	6,505	311	8,012	371	9,593	376	10,335	50%	59%
안성시	308	7,999	342	8,828	378	9,774	360	9,896	17%	24%
김포시	182	4,720	225	5,814	310	8,016	338	9,291	86%	97%
성남시	396	10,273	439	11,338	344	8,895	337	9,263	-15%	-10%
군포시	121	3,129	134	3,453	307	7,938	308	8,466	155%	171%
동두천시	248	6,425	275	7,090	330	8,533	290	7,972	17%	24%
안양시	266	6,917	296	7,634	267	6,904	274	7,532	3%	9%
광주시	182	4,733	202	5,223	201	5,197	211	5,800	16%	23%
여주시	187	4,845	207	5,347	224	5,792	202	5,553	8%	15%
가평군	341	8,840	354	9,146	205	5,301	193	5,305	-43%	-40%
양평군	196	5,086	218	5,614	183	4,732	183	5,030	-7%	-1%
이천시	218	5,653	229	5,905	182	4,706	164	4,508	-25%	-20%
오산시	101	2,610	112	2,880	124	3,206	145	3,986	44%	53%
연천군	156	4,046	170	4,385	132	3,413	123	3,381	-21%	-16%
광명시	145	3,758	161	4,147	146	3,775	118	3,244	-19%	-14%
구리시	94	2,438	104	2,690	116	3,000	91	2,501	-3%	3%
하남시	85	2,217	95	2,447	89	2,301	88	2,419	4%	9%
의왕시	68	1,773	76	1,957	67	1,732	60	1,649	-12%	-7%

## 참고7

## 양주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총량제) 시행

양주시 고시 제2021-309호

## 양주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총량제) 시행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양주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총량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7. 26.

양 주 시 장

### ○ 고시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 사회복지과-29914(2021. 7. 23.)호 [노인장기요양기관 총량제 시행계획]

### ○ 시 행 일 : 2021. 7. 26.(월)

### ○ 고시주기 : 1년

- 단, 차기 고시시점은 직전년도말 현황자료로 일원화하기 위해 2023년 1월 예정이나, 관련 법률(자치법규 포함) 개정 및 환경 변화시 고시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 시설급여 현황

(2021. 4. 30.기준)

노인 인구수	<공급> 요양시설 정원수 (A)	<수요> 시설급여 판정자수 (B)	시설급여 입소자수 (C)	수요 대비 공급률 (A/B)	비 고
37,383명	4,874명	3,963명	3,468명	123%	

### ○ 지정제 강화(총량제) 내용

구 分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제한여부	제한	미제한	미제한
공 급 률	123%	32%	—
해당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목욕, 간호 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	모든 시설

## 양주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총량제) 시행 고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양주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총량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31일

### 양 주 시 장

#### □ 고시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 사회복지과 4179(2023. 1. 27.)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총량제 연장계획)」

#### □ 시행 일 : 2023. 2. 1.(수)

#### □ 고시주기 : 1년

※ 단, 차기 고시 시점은 직전년도말 현황자료로 일원화하기 위해 2024년 2월 예정이나, 관련 법률(자치법규 포함) 개정 및 환경 변화시 고시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 노인인구 및 장기요양 시설급여 현황

(2022. 12. 31. 기준)

노인인구수	<공급> 요양시설 정원수 (A)	<수요> 시설급여 판정자수 (B)	입소자수 (C)	수요대비 공급률 (A/B)	비고
41,886명	5,726	4,305	4,093	133%	공급률 110% 이상으로 지정제한

## □ 지정제 강화(총량제) 내용

구 분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제한여부	제한	미제한	미제한
공 급 률	133%	31%	-
해당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목욕, 간호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등	모든 시설

- 제한기준 : 공급률 110% 초과시(여유분 10% 반영)
- 노유자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신·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지정 불가
  - 최초고시 시행(2021. 7. 26.) 이전 접수된 시설은 가능
  - 노유자시설 중 타용도(어린이집, 장애인시설 등) 사용 불가
  - 기존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변경 불가
  - 건축 인허가(신축, 증축),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설계변경(기 허가를 득한 범위 내 변경 가능), 건축물대장 기재 사항 변경 포함
  - 개발행위허가, 변경(기 허가를 득한 범위 내 변경 가능)허가 제한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용도 중 단독·공동주택도 지정 불가
-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은 지정 가능

## 참고8

### 관련 기사

#### 노인의료복지시설 116곳 포화…시설 급여 예산 68억서 274억으로 껑충

경기 양주시가 내일부터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정(공급)을 제한한다.

양주시 내에 영리 목적의 개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기관)이 많이 생기면서 시가 부담하는 시설 급여 예산이 2018년 68억 원에서 지난해 274억 원까지 급증했기 때문이다. 예산 부담 규모가 해마다 평균 41억 원씩 증가한 것이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날 ‘양주시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총량제’ 시행을 고시했다.

이는 양주시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공급률을 110%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일부터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신·증축과 용도 변경을 할 수 없게 된다.

양주시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총 116곳이다.

2018년 44곳에서 5년 만에 72곳이나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가까운 장흥면에 31곳이 몰려 있다.

다음은 백석읍 28곳, 양주2동 11곳, 회천 2동 9곳, 은현·광적면 각각 7곳 등이다.

이러면서 현재 양주시내 요양시설은 이미 1421명이나 정원을 초과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다른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요양시설에 전입 신고를 하면서 시가 부담하는 시설 급여 예산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시가 2018년 부담한 예산은 68억 원이었는데, 지난해엔 무려 274억 원으로 5년 만에 206억 원이나 증가했다.

상황이 이러자 시는 2021년 7월26일 처음 시행한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총량제를 다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통해 개인의 노인요양시설 난립을 막고 시 재정 부담은 완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기북부에서는 양주시를 비롯해 포천·의정부시도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정을 제한하는 중이다.

프레시안, “‘41억을 매년 어찌 감당하나’…양주시 ‘억’소리 나는 부담금”, 2023.01.31.

# 찬성자서명

(장기요양 시설·재가 급여, 국가 사무 전환 촉구 건의안)

의원명	날인(서명)	비고
윤창철	윤창철	
한상민	한상민	
이지연	이지연	
정현호	정현호	
최수연	최수연	
김현수	김현수	
정희태	정희태	
강혜숙	강혜숙	